

□ CDM 사업이란?

○ CDM(Clean Development Mechanism, 청정개발체제)

-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(CER, Certified Emission Reduction)을 해당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
- 승인된 사업은 7~21년 간 CER을 나누어 발급받음
- '17년 6월 기준 약 215개의 CDM 방법론이 UN에 등록되어있음

○ CDM 관련 쟁점 이슈

- 교토의정서가 만료되고 파리협약 체제가 시행됨에 따라('21~) 기존 교토의정서 하 제도였던 CDM이 파리협약 하에서도 유효한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(기존사업, 신규사업 모두 포함)

□ CDM의 파리협약 전환 시나리오

- CDM 사업은 국제사회에서 10년 이상('08~) 지속되어오며 체계가 상당부분 자리잡은 상황으로 전면폐지 후 신규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무리
- 전문가들은 기존 CDM 사업의 부분 인정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며 구체적인 내용이 올 12월 COP25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

○ CDM의 파리협약 전환 시나리오

1. 기존의 모든 CDM 사업 및 CER의 100% 전환
 - 브라질, 인도, 중국 등 CDM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서 주장
2. 일부 CDM 및 CER 전환 : 유력
3. CDM과 CER의 전환 불가
 - EU 등 선진국 측 주장
 - 현재 개발된 CDM 사업에 의해 발급될 잠재 CER(154억톤)을 모두 인정하게 되면 해당실적만으로 2030 국가 감축목표를 달성 가능하게 되므로 인정 불가 입장

○ CDM의 파리협약 전환 시나리오 - Perspective Climate Group Report

	Cut-off on Registration date	Limitation on project type/technology	Limitation of Host Countries	Potential CER generation (PoAs and projects) (million CERs)	
				pre and post 2020	post 2020
Pathway A	No cut-off date	All types eligible	All countries eligible	15,445	7,543
Pathway B	Only CDM activities with registration date on or after 1 January 2013	Exclusions of: - Industrial gases (HFC and N ₂ O adipic acid) - Large hydro (above 15MW)	All countries eligible	885	505
Pathway C	Only CDM activities with registration date on or after 5 November 2016	Exclusions of: - Industrial gases (HFC and N ₂ O adipic acid) - Large hydro (above 15MW) - Projects involving clean coal/EE on coal for industrial applications - Reforestation and afforestation	Only LDCs and SIDS eligible	128	106

- 독일의 유명 온실가스 컨설팅업체 Perspective Climate Group의 보고서에서는 3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시장에 유통될 CER양을 추정
 - A. 전부 인정 : 약 154억톤 CER 시장 공급
 - B. 대규모 CDM사업(냉매·아디프산 공정, 대수력사업) 제외 : 8.9억톤 공급
 - C. 대규모 CDM사업 제외, 최빈국에서 실시한 사업만 인정 : 1.3억톤 공급
- 현재 Pathway B와 C 사이의 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으며, Pathway C 시나리오에서 국가 한정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 논의 중

□ 회원사의 향후 대응방향 - CDM 전환 리스크를 고려한 투자 전략

① 대상국가 : LDC

- UN에서는 매년 LDC*(Least Developed Countries) 명단을 발표하고 있음
 - * 2018.12월 기준, 캄보디아, 미얀마 등 33개국
- 모든 국가가 감축의무를 지는 파리협약 체제에도 불구하고, LDC에 대해서는 재정적·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컨센서스가 분명
- 따라서 LDC에 투자한 CDM사업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CER의 경우에는 파리협약 체제에서도 제제대상 예외 가능성 높음

② 사업시기 : 2016.11.05 이후 시작된 사업에 투자

- 2016.11.05는 파리협약 비준일으로써 해당 날짜 이후에 진행된 사업은 교토의 정서가 아닌 파리협약 체제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해석할 수 있음

③ 사업규모 및 성격

- 극소규모 프로그램(PoA, Programme of Activities)에 투자
- 현재 냉매·아디프산 공정배출 감축사업 및 대규모 수력발전 사업 등은 타 CDM사업과 비교하여 감축 노력대비 많은 양의 CER을 발급 받을 수 있어 국제사회에서 지양하고자 하는 움직임 있음
- 따라서 하나의 큰 사업보다는 다수의 극소규모 프로그램에 투자하여 CER 확보하는 것이 리스크 분산 가능